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511호 2020. 5. 6(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0. 5.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 권고 부분 일부 적용
- 민관 태스크 포스 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자격 조정 : 만 19세→ 만 18세,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 추가 (안 제7조)
- 나. 위원의 선정 시 개인과 단체의 비율 삭제 (안 제8조)
- 다.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 가능 (안 제8조)
- 라.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가능 (안 제13조)
- 마.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 (안 제20조)

- 바.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23조)
 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2020. 5.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88,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 권고 부분 일부 적용
- 민관 태스크 포스 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자격 조정 : 만 19세→ 만 18세,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 추가 (안 제7조)
- 나. 위원의 선정 시 개인과 단체의 비율 삭제 (안 제8조)
- 다.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 가능 (안 제8조)
- 라.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가능 (안 제13조)
- 마.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 (안 제20조)
- 바.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23조)
- 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첨부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동 주민이면”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립·시행하는”을 “수립하는”으로, “민관협력”을 “민관 협력”으로 한다.

제5조 중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업무에 대한 협의”를 “업무”로 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19세 이상의”를 “만 18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을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단체에 소

속된 사람”을 “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력”을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는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는 해당”을 “해당”으로, “각 급”을 “각급”으로, “주민공동조직, 통장연합회”를 “주민공동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를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를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로,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를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에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서구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을 둘 수 있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② 단,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u>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u></p> <p>2. (생 략)</p> <p>3. “주민총회”란 <u>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u></p> <p>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u>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 <u>주민</u> <u>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제7조제1항 각 호에</u> <u>해당하는 사람은</u> ----- ----- -----.</p> <p>4. ----- ----- ----- <u>수립하는</u> ----- ----- <u>민관 협력</u> ----- -----.</p>
<p>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u></p>	<p>제5조(기능 및 권한) ----- ----- ----- ----- ----- <u>수행한다.</u></p>
<p><신 설></p>	<p>1. <u>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u></p>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생략)

3.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
----- 업무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제>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만 18세 이상인

-----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

----- .

1. (현행과 같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제3호의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 보는 법인 단체

③ (생략)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는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 ⑨ (생략)

<신설>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1. 공개모집-----

2. 해당 -----
----- 각급 -----
----- 주민공동조직 -----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임기 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5장 보칙

<신 설>

<신 설>

제25조 ~ 제27조 (생략)

---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

제25조(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서구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을 둘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